

# Atlas Copco (“아트라스콤포”) 납품에 대한 일반 구매약관

## 1 일반

- 1.1 본 일반 약관은 공급자에게 발주되는 전체 문외와 요청, 주문에 적용한다. 공급자는 제품이 영업 공급망의 일부인 점을 반영하여 해당 문외와 요청, 주문에 관한 특정 요구를 파악한다. 이는 특히 납품 및 품질 정확성에 적용된다.
- 1.2 일반 약관의 수정이나 변경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
- 1.3 특정 프로젝트에 대해 체결되는 서면 계약이나 제 당사자 간에 체결하는 공급 계약의 약관은 본 일반 약관에 우선하되, 해당 약관이 본 일반 약관의 요건을 일부나 전부 대체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 1.4 공급자가 8 일 이내에 비인수 약관을 명시하는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본 약관은 문외나 요청, 주문 수락 시 공급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1.5 공급자의 판매 약관이 전적으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더라도 문외, 요청 또는 주문을 수락하게 되면 아트라스콤포 일반 구매 약관이 우선 적용된다. 해당 공급자는 본 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1.4 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기로 약속한다.

## 2 정의

본 약관에서 아래 용어는 아래의 의미를 갖는다.

- 제 당사자:** Atlas Copco Korea 및 공급자
- 공급자:** 문외나 요청, 주문이 송부되는 기업
- 제품:** 전체 제품이나 부품뿐만 아니라 예비 부품 및 관련 서비스를 비롯하여 본 약관에 따라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 문의:** 공급자가 아트라스콤포에 납품하는 제품에 대한 질문 및 후속 정보 교환
- 공정:** 공급자가 아트라스콤포의 공급망 일부가 되었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모든 행위
- 요청:** 제품에 대한 기술 및/혹은 상업 정보 요청이나 견적 의뢰서
- 주문:** 아트라스콤포가 공급자에 납품을 발주하는 서면 주문

## 3 제품 정보

- 3.1 당사자 일방이 문외나 요청, 주문 이전 또는 이후에 제품이나 제품의 제조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제출하는 도면과 규격, 기술 문서 일체는 제출 당사자의 재산으로 한다.
- 3.2 당사자 일방이 수령하는 도면이나 규격, 기술 문서, 기타 기술 정보는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재공 목적을 제외한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해당 문서와 정보는 제공 당사자의 서면 동의 없이 복사, 복제하거나 제 3 자에게 전송 또는 전달하거나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3.3 카탈로그와 계획서, 회람, 광고, 도해, 가격표에 포함되는 중량과 치수, 용량, 가격, 규격, 기타 데이터는 근사치로만 간주한다. 본 데이터는 문외나 요청, 주문에 명시적으로 언급되는 경우에만 구속력을 갖는다. 단, 공급자는 1.4 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3.4 공급자는 아트라스콤포가 사용 목적에 맞게 제품을 사용하고 제품을 적절히 수리 및 정비하는 데 필요한 제품의 정보 및 도면 일체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 4 품질관리 및 인수시험

### 품질 관리

- 4.1 원칙: 제품 및 공정의 우수하고 일관성 있는 품질 유지와 제품 품질에 대한 목표 및 목적 달성은 공급자 협력의 중점 분야이다. 아트라스콤포에 있어 최우선 과제는 공정 및 제품의 우수하고 일관성 있는 품질 달성과 유지이다. 공급자는 이를 반영하여 아트라스콤포가 공정 및 제품 품질에 대해 규정하는 목표 및 목적을 달성하기로 약정한다. 공급자는 아트라스콤포가 품질을 중시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모든 협력 분야에서

- 4.2 우수하고 일관된 품질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속적 개선과 품질 문화의 정착이라는 취지에 따라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 4.3 공급자는 서면에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ZDS, 즉 “무결점 공급” 원칙에 따라 제품을 납품한다. 아트라스콤포는 본 원칙을 반영하여 제품을 반입할 때 납품 제품의 시험이나 확인,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 4.4 아트라스콤포는 납품완료 이후에도 정식 위임 대리인에게 각 제품의 품질 관리 및 확인을 위임할 수 있다. 이러한 관리와 확인은 공급자의 제조 공정뿐만 아니라 납품 이후 아트라스콤포 부지나 아트라스콤포의 고객 부지 안에서 수행할 수 있다.
- 4.5 아트라스콤포가 본 관리 및 확인, 등을 토대로 제품에 결함이 있거나 해당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아트라스콤포는 거부로 인해 정한 절차에 따라 공급자의 비용과 위험 하에 제품을 거부한다. 공급자는 아트라스콤포와 협의하여 (i) 불량품을 반품하거나 (ii) 공급자의 비용으로 폐기하거나 (iii) 공급자나 아트라스콤포, 제 3 자에게 자비로 수리를 받을 것인지 명시한다.
- 4.6 제품의 거부 시, 공급자는 결함 또는 부적합의 원인을 즉시 시정하고 거부 제품을 대체하는 정확한 제품을 지체 없이 자비로 납품할 책임이 있다.
- 4.7 해당 품질 관리나 확인이 실시되지 않았더라도, 아트라스콤포는 해당 규격에 부합하지 않거나 숨겨진 결함이 있는 제품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 4.8 반복되는 거부에 근거하여 공급자가 품질 규격 및 요건을 준수할 수 있는지 타당한 의심이 제기될 경우, 아트라스콤포는 발주를 중단하고 협력을 전부나 일부 종료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서면 통지를 송부하여 즉시 발효된다. 이 경우 아트라스콤포는 임금 및 급여 비용과 투자에 대한 가속 상각, 이익 손실과 같이 해지로 발생하는 직접 또는 간접 손실이나 비용을 공급자에 보상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 인수 시험

- 4.9 인수 시험은 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정식 제품의 실물모형이나 프리 시리즈(pre-series)(또는 파일럿 배치) 제품, 표본에 대해 실시할 수 있다.
- 4.10 인수 시험은 제 당사자가 합의한 규정에 따라 공급자나 아트라스콤포의 부지 혹은 아트라스콤포의 고객 부지에서 실시한다. 시험의 기술 요건이 지정되지 않을 경우, 시험은 제품이 납품되는 국가의 관련 인증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관행에 따라 실시한다.
- 4.11 아트라스콤포는 공급자가 시험에 입회할 대리인을 파견할 수 있는 시간을 두고 예정된 인수 시험을 공급자에 고지한다. 공급자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고지 받지 못한 사유로 해당 시험에 입회하지 못할 경우에는 전체 시험 절차의 반복을 요구할 수 있다. 공급자가 해당 시험에 입회하지 않기로 결정할 경우, 아트라스콤포는 공급자에게 서면 시험 보고서를 제공한다.
- 4.12 시험 과정에서 제품에 결함이 있거나 해당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확인될 경우, 공급자는 해당 결함이나 부적합을 즉시 시정하며, 그 후 시험을 반복한다.
- 4.13 제 당사자가 별도의 서면에 합의하지 않는 한, 실시되는 시험에 관한 비용은 전액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 5 기밀유지

- 5.1 제 당사자는 제품 및 당사자 일방의 영업 활동에 관하여 문의, 요청 또는 주문의 처리에 필요한 일체의 정보를 공개한다.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서면 동의를 제공하지 않는 한 제 3 자에게 본 정보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
- 5.2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아트라스콤포나 공급자의 상호뿐만 아니라 상품명이나 상표, 제품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5.3 당사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 당사자 간에 실행된 이전 또는 현행 협력에 관한 정보를 제 3 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단 이러한 기밀유지 및 사용금지 확약은 (i) 공개된 정보, (ii) 협력을 제외한 기타 출처를 통해 공개당사자에 선의로 제공되는 정보에 적용하지 않는다. 본 규칙의 예외는 비공개 당사자의 서면 승인을 요한다.

### 아트라스콤포 코리아

아트라스콤포 코리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92 번길

14-1 에미지빌딩 6~9 층

대표 번호: +82 (0)31 620 0600

팩스 번호: +82 (0)31 620 0601

홈페이지: [www.atlascopco.com/ko-kr](http://www.atlascopco.com/ko-kr)

블로그: [http://blog.naver.com/atlas\\_copco](http://blog.naver.com/atlas_copco)

## Atlas Copco (“아트라스콤포”) 납품에 대한 일반 구매약관

- 5.4 공급자의 제품 발주가 해지되는 경우, 각 당사자는 상대방이 제공하는 문서 및 유형의 기타 정보 일체와 함께 이의 사본을 즉시 반환하고 해당 문서 및 기타 정보를 사용하거나 타인의 사용을 허가해서는 안된다.
- 5.5 본 조의 기밀유지 및 사용금지 약관은 제 당사자의 협력이 해지된 이후에도 존속한다.

### 6 납품 조건

- 6.1 구매서에 별도로 명시하거나 합의하지 않는 한, 각 납품에 지정되는 기간은 아트라스콤포가 발행하는 주문일부터 기산한다.
- 6.2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위험 및 비용은 공급자의 생산 현장이나 창고, 기타 합의 장소에서 트럭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하차될 때 아트라스콤포에 이전된다.
- 6.3 아트라스콤포 구매서에 기재되는 납품일은 제품이 당사에서 지정하는 장소로 납품, 제공 및 설치 되는 날짜이다.
- 6.4 납품 제품은 구매서의 규정뿐만 아니라 합의된 규격, 도면, 품질 규격에 부합해야 한다. 공급자는 치수, 수량, 중량에 관한 아트라스콤포의 판단을 우선적으로 따른다.
- 6.5 지정 납품일에 제품을 납품할 수 없다고 예상될 경우, 공급자는 지연 예상의 근거뿐만 아니라 신규 예정 납품일을 기재하는 서면을 아트라스콤포에 통지한다. 공급자가 해당 서면 통지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아트라스콤포는 아트라스콤포가 부담하거나 아트라스콤포가 해당 서면 통지를 수령하였다면 방지할 수 있었던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 6.6 아트라스콤포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 불이익이 없도록, 공급자는 12 조에 언급하는 대로 납품의 지연이나 지연 납품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의 발생을 아트라스콤포에 즉시 통지한다. 단, 공급자는 본인의 납품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 6.7 납품 지연이 12 조에 언급되는 상황이나 아트라스콤포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 납품 기간은 전체 관련 정황을 고려하여 합당한 기간만큼 연장한다. 이는 지연 사유가 납품일 이전이나 이후에 발생한 것과 무관하게 적용한다.
- 6.8 공급자가 납품 조건 및 납품일을 준수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할 수 있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공급자의 의무이다.
- 6.9 공급자의 지연 납품 시, 아트라스콤포는 납품의 이행뿐만 아니라 지체보상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이에 덧붙여, 공급자는 납품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토대로 제 3 자에게 지불된 비용을 아트라스콤포에 보상한다.
- 6.10 제품이 납품일에 납품되지 않을 경우, 아트라스콤포는 납품 예정일부터 지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주문의 일부만 지연될 경우, 지체보상금은 지연으로 인하여 예정대로 사용할 수 없는 주문의 일부를 토대로 계산한다. 지체보상금은 아트라스콤포의 서면 요구 시 지불해야 한다. 일별 지체보상금은 본 구매서를 통해 공급자로부터 구입하는 제품가격의 0.1%로 하되 본 금액의 1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 6.11 아트라스콤포는 납품 예정일 이후 12 개월 안에 해당 손해에 대한 서면 클레임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체보상금에 대한 권리가 박탈된다.

### 7 지불

- 7.1 구매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지불 기한은 아트라스콤포가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날짜로부터 만 60 일이다.
- 7.2 지불은 납품의 정식 인수로 여겨지지 않는다.
- 7.3 공급자는 아트라스콤포가 적시에 지불하지 않을 경우 지불액에 대한 이자를 주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을 적용한다.

### 8 가격 합의

- 8.1 제 당사자는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가격을 변경할 수 없다.

- 8.2 유효 가격은 상대방이 서면 의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효력을 유지한다.
- 8.3 정상 조건 하에 운송하는 동안 손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포장 및 보호 비용은 서면에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제안서 및 송장에 기재되는 가격에 포함된다.

### 9 품질 보증

- 9.1 공급자는 제품이 잘못된 재료, 세공 또는 설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시적, 비가시적 또는 숨겨진 결함을 가지지 않으며, 공급자가 숙지하는 사용 목적에 적합하다고 보증한다. 공급자의 보증은 별도의 서면에 합의하지 않는 한 아트라스콤포에 대한 납품일 또는 시운전일로부터 12 개월로 한다.
- 9.2 보증 기간 동안 공급자에게 책임이 있는 결함에 대해, 해당 공급자는 아트라스콤포가 제시하는 지침에 따라 아트라스콤포의 사업장 또는 아트라스콤포의 고객 사업장으로 교체 제품을 운송 및 취급하는 비용을 포함하여 모든 불량품의 완전한 무상 교체 또는 무상 수리를 실시한다.
- 9.3 본 조로 인하여 교체되는 제품은 교체일부터 원 제품과 동일한 보증 약관을 적용한다.
- 9.4 공급자는 보증 기간 동안 보고되는 품질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지체 없이 시정 조치에 착수 및 실행한다. 공급자가 아트라스콤포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치를 위해 정한 시한 안에 해당 시정 조치에 착수하거나 이를 실행하지 않을 경우 아트라스콤포는 서면 통지를 통해 공급자의 조치를 완료할 최종일을 정할 수 있다. 공급자가 이러한 최종 시한 동안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아트라스콤포는 공급자의 위험 및 비용으로 필요한 시정 조치를 실시하거나 이를 위해 제 3 자를 고용할 수 있다. 아트라스콤포나 제 3 자가 시정 조치를 취한 경우, 공급자는 아트라스콤포에 발생하는 비용 전액을 변상할 책임이 있다.

### 10 책임

- 10.1 공급자는 후속 개정 및 추가를 비롯하여 국내법 및 규정이 제조사에 부과하는 일체의 책임을 수락한다. 공급자는 해당 법규를 준수하고 해당 법규를 토대로 제품에 대한 책임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부터 아트라스콤포를 면책한다.
- 10.2 공급자는 제품을 납품할 당시 관련 법을 요건 및 정부 규정을 준수한다고 보증한다. 아울러 공급자는 제품이 제 3 자의 특허권이나 상표권, 기타 산업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증하며 해당 권리를 토대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으로부터 아트라스콤포를 면책한다.
- 10.3 공급자는 10.1 및 10.2 조에 언급되는 법규의 비준수를 토대로 정부 당국을 비롯한 제 3 자가 제기하는 클레임에 관한 비용에 대해 아트라스콤포를 면책한다.
- 10.4 공급자는 숨겨진 결함과 관련된 비용 또는 제품의 결함이나 제품에 관하여 공급자가 작성하는 지침, 정보, 경고의 부족에 근거하는 제 3 자의 제조물 책임으로부터 아트라스콤포를 면책한다.
- 10.5 이러한 공급자의 약관은 10.1, 10.2 및 10.3 항에 언급되는 클레임과 관련하여 아트라스콤포가 부담하였거나 부담해야 하는 비용 전액을 보상한다.
- 10.6 해당 클레임이 발생할 경우, 공급자는 클레임의 방어를 위한 정보와 서류, 기타 증빙이나 자료 일체를 아트라스콤포에 무상으로 제공한다.
- 10.7 공급자는 공급자 본인 및/혹은 제조사가 확인될 수 있는 부속과 부품, 제품, 원료만 사용한다.
- 10.8 공급자는 상기 10.1, 10.2 및 10.3 항에 기재되는 책임을 보상하는 보증을 유지하며 피보험액은 각 책임 노출의 기한 동안 위험을 보상할 수 있어야 한다.

### 11 산업재산권

#### 아트라스콤포 코리아

아트라스콤포 코리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92 번길

14-1 에미지빌딩 6~9 층

대표 번호: +82 (0)31 620 0600

팩스 번호: +82 (0)31 620 0601

홈페이지: [www.atlascopco.com/ko-kr](http://www.atlascopco.com/ko-kr)

블로그: [http://blog.naver.com/atlas\\_copco](http://blog.naver.com/atlas_copco)

## Atlas Copco (“아트라스콤포”) 납품에 대한 일반 구매약관

- 11.1 공급자는 제 3 자의 특허나 상표, 의장권, 저작권, 기타 산업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증한다.
- 11.2 공급자는 손해 지불액을 비롯하여 11.1 항에 기재되는 권리의 침해를 토대로 하는 클레임에서 발생하는 비용 전액을 배상하고 아트라스콤포를 면책한다.
- 11.3 문이나 요청, 주문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특허 여부에 관계 없이 제 당사자의 노력으로 생성되는 발명물은 별도의 서면에 합의하지 않는 한 아트라스콤포에 귀속된다. 아트라스콤포에 의해 임명되었으며, 발명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아트라스콤포의 독점적 재산이라는 점에 계약상 합의한 컨설턴트나 아트라스콤포 직원에 의해 창작된 특허대상 발명물, 그리고 문, 요청 또는 주문에서 발생한 문제의 해결과 관련된 발명물은 공급자가 문, 요청 또는 주문을 처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공급자가 해당 발명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는 제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한다.
- 11.4 제 당사자가 제품의 지속적 납품 또는 향후 납품이나 납품의 수정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아트라스콤포가 주문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한 경우, 또는 공급자가 본 일반 약관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아트라스콤포가 다른 공급자를 이용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아트라스콤포는 신규 공급자가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공급자로부터 수령한 설계 및 기타 서류를 해당 공급자에 제시할 권리가 있다.
- 11.5 아트라스콤포가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모델, 공구 및/혹은 재료를 공급자에 제공하거나 공급자가 아트라스콤포의 비용으로 해당 모델이나 공구, 재료를 제조 또는 구입하는 경우, 해당 모델이나 공구 및/혹은 재료는 아트라스콤포의 재산으로 한다. 공급자는 본인의 비용 및 위험으로 본 모델과 공구, 재료를 보관하기로 약속한다. 공급자는 자체 비용 및 위험으로 모델과 공구, 재료를 양호한 상태로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수리 및 교체한다. 공급자는 이의 손실이나 도난, 손해에 대비하여 자비로 보험에 가입한다.
- 11.6 아트라스콤포가 주문을 발주하기 전에 해당 제품이 자체 마케팅 채널을 통해 동일한 구성의 표준 제품으로 시장에 이미 출시되어 있지 않는 한, 공급자는 아트라스콤포의 서면 허가 없이 필요한 정비 또는 예비 부품을 비롯한 제품을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그밖에 제 3 자에게 이를 납품 및/혹은 제의해서는 안 된다.
- 
- 12 산업안전보건법의 준수**
- 12.1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킨다.
- 12.2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키고,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 
- 13 불가항력**
- 13.1 당사자 일방은 본 약관에 따른 의무의 이행이 아래의 상황으로 인하여 지체되거나 과도한 부담이 가해질 경우 해당 이행을 중지할 권리가 있다. 노사 및 산업 분쟁, 화재나 전쟁, 내전, 폭동, 광범위한 군사동원, 정발, 압수, 통상금지, 본 항에 언급되는 상황으로 인한 하도급자의 결함 및 납품 지연
- 13.2 본 항에 언급되고 아트라스콤포의 발주 이전이나 이후 발생하는 상황은 구매시 수령 당시 본 일반 약관에 따른 의무 이행 가능성에 대한 영향을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경우에만 중지권을 부여한다.
- 13.3 불가항력의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해당 상황의 개시 및 종단을 상대방에 지체 없이 통지한다.
- 13.4 본 일반 약관의 규정에 관계 없이, 의무의 이행이 1 개월 이상 중지될 경우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 대한 서면 통지를 통해 수령된 발주에 따른 의무를 해지할 수 있다.
- 13.5 12.3 항의 규정 대로 주문이 해지될 경우, 주문을 이행하기 위해 이미 부담한 비용의 배분은 제 당사자간에 원만하게 합의하며 합의에 실패할 경우에는 14.3 항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
- 13.6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후속 납품이 여의치 않고 제품에 발생한 전체 주문이 해지될 경우, 공급자는 관련 제품의 생산에 사용하는 전체 도면과 공구, 등이 아트라스콤포의 재산이 아니라도 제 당사자가 합당한 보상에 합의하는 한도 안에서 이를 아트라스콤포에 제공하기로 약속한다.
- 
- 14 비준수**
- 14.1 공급자가 본 일반 약관에 따른 약속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인식될 경우 아트라스콤포는 공급자가 준수하지 않은 분야를 식별하고 서면으로 공급자에 통지한다. 아트라스콤포는 공급자가 해당 비준수를 시정하기 위하여 시정 조치에 착수하여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재량 기간을 지정한다. 해당 재량 기간은 20 일 이상으로 한다.
- 14.2 공급자는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공급자의 시정 조치 결과는 아트라스콤포의 평가를 받는다.
- 14.3 공급자가 해당 조치에 정해진 시한 안에 요구되는 시정 조치에 착수하거나 이를 실행하지 않을 경우, 공급자는 본 일반 약관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한다. 해당 위반은 공급자의 일방적 협력 중단으로 간주한다.
- 14.4 이 경우 아트라스콤포는 타 공급자로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보상금을 공급자에게 청구하고, 제품의 원활한 납품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
- 
- 15 분쟁, 증거법 및 관할 법원**
- 15.1 본 계약에 명시적 서면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본 일반 약관과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은 법률 충돌의 규칙을 배제하고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
- 15.2 제 당사자는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각 당사자는 본 일반 약관으로 인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논쟁이나 주장을 상대방에 서면으로 통지하기로 약속한다.
- 15.3 합리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당사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법령에 따라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 15.4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다만 양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 15.5 본 일반 약관의 해석에는 한국어를 사용한다.

**아트라스콤포 코리아**

아트라스콤포 코리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92 번길

대표 번호: +82 (0)31 620 0600

홈페이지: [www.atlascopco.com/ko-kr](http://www.atlascopco.com/ko-kr)

14-1 에미지빌딩 6~9 층

팩스 번호: +82 (0)31 620 0601

블로그: [http://blog.naver.com/atlas\\_copco](http://blog.naver.com/atlas_copco)